### 1. 개정이유

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고, 교육정원은 한정되어 있어 교육접수가 조기에 마감되는 상황인 바, 교육 유효기간을 조정하여 실수요자가 우선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가. 개인택시 양수교육의 유효기간을 조정(안 제2조제1항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한국교통안전공단 합의

라. 기 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43호

#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

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"3년"을 각각 "1년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교육대상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교육대상) ① 한국교통안전	제2조(교육대상) ①
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안전체험,	
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	
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	
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(이	
하 "교통안전교육"이라 한다)의	
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	
는 자로 한다.	<b>.</b>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교육 수료일로부터 <u>3년</u> 이내	2 <u>1년</u>
에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에	
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	
를 양수하려는 자	
3. 교육 수료일로부터 <u>3년</u> 이내	3 <u>1년</u>
에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	
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	
리운전을 하려는 자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